

#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KOTRA**

동북아팀

## <차 례>

I. 야채 대일 수출시장 개요 .....	1
1. 들어가며 .....	1
2. 대일 주수출품목 및 포지티브 대비 필요성 .....	1
II.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 제도 도입 .....	2
1. 경위 및 기본 개요 .....	2
2. 규제대상 및 내용 .....	2
III. 제도 도입 영향 및 시사점 .....	3
1. 영향 예측 : 미국, EU 등 외국과의 비교 .....	3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	3
IV. 참고자료 .....	4
1.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2006년도) .....	4
2. 일본포지티브시스템 관련 인터넷 참조주소 .....	4
3. 신 포지티브 제도가 주요야채의 농약 잔류기준 .....	4

# I. 야채 대일 수출시장 개요

## 1. 들어가며

### □ 한국의 농산물 수출의 비중

- 2005년도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0.67%에 지나지 않아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산물의 수출은 FTA 개방등의 파고를 맞고 있는 우리 농가에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임

<한국 전체 수출 중 농산물 수출 비중> (단위 : 백만불,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수출	172,268	150,439	162,471	193,817	253,845	284,419
농산물	1,133	1,252	1,375	1,563	1,759	1,899
비중	0.65	0.83	0.84	0.8	0.69	0.67

출처 : 한국 농림부

- 특히 그 중에서도 대일 수출은 한국의 농산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한국 농산물 수출 중 대일수출 비중> (단위 : 백만불,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세계수출	1,133	1,252	1,375	1,563	1,759	1,899
대일본수출	461(41%)	474(33%)	460(34%)	537(34%)	627(36%)	620(33%)
대미국수출	124(11%)	148(13%)	185(13%)	192(12%)	222(13%)	238(13%)
대중국수출	59(5%)	68(5%)	96(7%)	117(7%)	151(9%)	184(10%)
대러시아수출	63(5%)	92(7%)	112(8%)	123(8%)	140(8%)	149(8%)

출처 : 한국 농림부

- 하지만, 2000년도에 비하여 대일 수출이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 있으며, 작년도에는 채소, 과실류의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김치 안전성 문제 대두 등의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가 발생하는 등, 절대치에서도 감소중임
- 본 보고서에서는 대일 농산물 소비시장 수출 실태, 그 중 특히 채소류를 살펴 보는 한 편,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시의 검역시의 달라지는 부분 및 우리 농가의 대처방안 등을 모색해 봄

## □ 일본의 야채 수입시장

-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던 야채부문에서의 대일 수출실적을 살펴 보면, 먼저 한국의 야채 수출은 기복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일본의 야채 수입 주요국 비율> (단위 : 백만불,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수입	944	911	731	805	883	867
1위 대중국수입	329(35%)	351(37%)	242(26%)	302(32%)	357(38%)	370(39%)
2위 대미국수입	202(21%)	170(18%)	152(16%)	148(16%)	150(16%)	125(13%)
3위 대뉴질랜드수입	93(10%)	83(9%)	67(7%)	87(9%)	76(8%)	87(9%)
4위 대한민국수입	94(10%)	91(10%)	71(8%)	78(8%)	86(9%)	87(9%)
5위 대태국수입	22(2%)	25(3%)	30(3%)	27(3%)	38(4%)	37(4%)

출처 : WTA, 야채기준(HS 0701~0709까지)

- 한국의 대일 야채 수출은 일본 야채 전체 수입량의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2002년도 등 사스여파로 인한, 야채수입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후,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일본의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있어서 국산품 선호의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수입 야채에 대해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나, 계절적인 요인, 가격적인 요인,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야채등을 중심으로 수입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2005년도 일본의 야채 수입 주요국 내용>** (단위 : 백만불, %)

	세계	중국	미국	뉴질랜드	한국	타이
전체	867	370(39%)	125(13%)	87(9%)	87(9%)	36(4%)
감자	0.04	0.04	0	0	0	0
토마토	16	0	7(44%)	0.9	6(38%)	0
양파,파,마늘	189	142(75%)	21(11%)	14(7%)	0.4	4(2%)
배추,양배추	107	36(34%)	66(62%)	0	4(4%)	0.2
상치	18	0.3	12(67%)	0	0.1	0
당근	64	52(81%)	0.6	2(3%)	0.03	0
오이류	1	0	0	0	1(99%)	0
완두,콩	26	17(65%)	0	0	0.005	0.2
고추,버섯등	443	120(27%)	17(4%)	69(16%)	74(17%)	32(7%)

출처 : WTA 일본 2005년도 수입 HS코드 0701~0709까지의 통계

- 일본의 야채 수입시장의 품목을 살펴 보면, 대부분에서 농업강국인 중국 및 미국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이 외에 남반구에 자리잡아 계절적으로 보완적인 뉴질랜드, 지리적으로 유리한 한국과 타이 등이 주 수입대상국이 되어 있음

**<일본의 야채 수입 주요국의 야채 관련 개황>**

(2004기준)	일본	중국	미국	뉴질랜드	한국	타이
인구	1억2,800만명	13억400만명	2억9,100만명	398만명	4,770만명	2,300만명
기후	해양성	온대, 아열대	온대, 아열대	온대 해양성	온대성	아열대, 열대
위치	동북아	아시아	북미대륙	남서 태평양	동북아	중국 동남부
면적	378천km	9,561천km	9,159천km	271천km	222천km (99천km)	36천km
야채생산량	11,699천톤	423,369천톤	39,185천톤	1,000천톤	10,062천톤	2,949천톤
야채수확면적	421천헥타	21,969천헥타	1,314천헥타	46천헥타	301천헥타	379천헥타
야채수출액	5,691천불	1,247백만불	1,763백만불	141백만불	92백만불	15,243천불
비고*	-	생산인력 다대 대일수출25%	첨단 농업 대일수출6%	대일수출50% 대EU수출20%	대일수출95% 이상	대일수출95% 이상

출처 : 농림부 세계속의 농업한국(2006), 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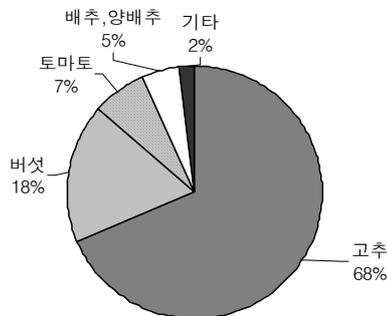
\* 비고 : 각국의 야채 대세계 수출액 중 대일수출액의 비율

## 2. 대일 주수출품목 및 포지티브 대비 필요성

### □ 한국의 대일 파프리카 수출 개황

-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 야채류는 파프리카, 버섯, 방울토마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일본명 점보피망, 한국명 파프리카 등의 수출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음 (통계상 고추류로 나타남)

<2005년 한국의 야채류 대일 수출 구성비>



\* HS 넘버 / 야채류:0701~0709, 고추:070960, 버섯:070959, 토마토:0702, 배추류:0704 등

- 일본의 파프리카 수요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식당, 식탁의 장식용등) 하절기는 네덜란드의 공급이 많고, 뉴질랜드가 11월~4월사이에 소량 공급하고 있으나, 이외의 기간은 한국산 파프리카 공급이 압도적임<sup>1)</sup>
- 파프리카를 살펴 보면 대일 수출에 있어서의 주 경쟁국인 네덜란드에 비하여 한국 파프리카는 단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점차적으로 시장을 점유하면서 단가가 상승하고 있음

1) 출처 : 동경 토시마 청과주식회사 이토우 마사루 전무이사 - 2006.4.9일 농협 특별 강연 내용 중에서

###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 주요국 추이>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수입	수입액	42,417	61,112	67,328	79,381	79,569	87,727
	단가	4.11	3.11	3.00	3.50	3.34	3.39
대한국	수입액	7,140(17%)	28,584(47%)	28,363(42%)	42,504(54%)	45,324(57%)	54,021(62%)
	단가	3.53	2.58	2.31	2.85	2.79	3.04
대네덜란드	수입액	25,187(59%)	21,225(35%)	26,879(40%)	23,906(30%)	20,815(26%)	20,757(24%)
	단가	4.07	3.71	3.94	4.74	4.52	4.08
대뉴질랜드	수입액	9,533(22%)	10,895(18%)	11,855(18%)	12,853(16%)	13,232(17%)	12,945(15%)
	단가	4.79	3.98	3.62	4.83	4.58	4.23

단위 : 백만불, %

출처 : WTA, 파프리카(HS 070960010)

- 상기 표를 참조하면 한국은 2000년도 17%에서 급속히 점유율을 높혀 2005년 현재 일본 파프리카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단가 또한 과거 박리다매형태에서 벗어나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일본 소비자로부터 많이 선택될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한국산 파프리카의 경우 작년도 클로르피리포스(クロルピリホス)가 기준치 0.5ppm보다 높은 0.8ppm이 검출되고, 금년 1월에 다시 동일 농약성분이 0.6ppm이 검출되는 등 이미 일본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주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여짐

### <최근 일본의 한국산 파프리카 농약검출 개요>

대상: 한국산 파프리카 / 검출항목 : 클로르피리포스(クロルピリホス, 살충제)					
사례1 위반확정일 : 2005년 12월 8일 반입량 : 209카톤(1,045kg) 처치 : 200카톤 소비완료, 9카톤 회수폐기			사례2 위반확정일 : 2006년 1월 27일 반입량 : 109카톤(545kg) 처치상황 : 유출상황 조사중		
2005~2006 년도 한국산 신선 파프리카 반입현황 / 검사현황					
년도	반입건수	반입중량(kg)	검사건수	위반건수	반입/검사비율
2005년도	14,345	17,822,803	601	1	23.9건당 1회
2006년도 1.29일까지	706	710,682	231	1	3.05건당 1회
* 2006년 1월 30일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출처 : 일본 농림성 식품안전부감시안전과					

## □ 포지티브 제도 대비의 필요성

- 일본은 2006년 5월 29일부로 농산물 잔여물질 검정기준을 기존의 네거티브제(특정품목기준을 특정농산물에 한정)에서 포지티브제(기준설정이 안된 부분도 일률적으로 0.01ppm적용)로 바꾸고 있음
- 금번 도입되는 포지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자국기준에 준용할 경우 별다른 대처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며, 뉴질랜드와 태국 등은 기존에 대EU 수출 등에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아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sup>2)</sup>
- 또한 현재 한국과 태국등은 자국 야채수출의 95%가량이 일본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시급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우 야채의 대일 수출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아 국가 및 업계의 관심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대처가 향후 일본의 신선야채 수입시장 판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게는 이번 제도변화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음

### <일본 신포지티브제도 대처성공,실패시 시장예측>

	한국 대처	중국 대처	예상
경우 1	성공적 대처	대처 미흡	일본내 중국야채↓, 한국야채(파프리카 이외)↑or 일본내 수입야채 신뢰성 전반 하락 인한 양국야채↓
경우 2	성공적 대처	성공적 대처	일본내 양국 야채↑or 가격경쟁력 의한 한국야채↓ 중국야채↑
경우 3	대처 미흡	대처 미흡	일본내 수입야채 신뢰성 하락 인한 양국야채↓ or 중국야채는 가격경쟁력으로 현상유지, 한국야채만↓
경우 4	대처미흡	성공적 대처	일본내 중국야채↑, 한국야채(파프리카등)↓

- 위 예측에서 [경우 4]는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보았을 때, 적어도 한국의 대처가 적절하여야만 한국 야채의 일본수입시장에서의 선전

2) 태국의 경우 네덜란드를 통한 EU시장 공략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04.3.6농수산물유통공사 네덜란드 농업무역관), 탁신총리등이 직접 나서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새 표준을 마련하여 농산품의 대EU/일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04.4.10.식품음료신문)

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한국산 야채등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한국산 전체의 농산물 신뢰도가 떨어져 대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일본 농산물 수입업체는 전망하고 있음<sup>3)</sup>
- 따라서 2006년 5월 29일로 다가온 일본의 농산물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하여 철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3) 출처 : 동경 토시마 청과주식회사 이토우 마사루 전무이사 - 2006.4.9일 농협 특별 강연 내용 중에서

## Ⅱ.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 제도 도입

### 1. 경위 및 기본 개요

-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식품 중에 농약 등 규정 물질이 일정량 이상 잔류할 경우,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2005년 5월 29일 전까지는 반대로 잔류해서는 안되는 것만을 기재하는 네가티브 방식이었음.
- 목표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 잔류기준을 정비하고 생산자, 제조자가 그 잔류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시행일은 2005년11월 29일 관계고지가 공표되었고 6개월의 주지기간을 거쳐 2006년 5월 29일에 시행.
- 식품중에 잔류하는 농약, 식품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이하 “농약 등”으로 줄여서 칭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식품안전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해옴 그러나 현행의 제도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식품에 대하여 잔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량 이상의 농약을 포함한 경우에 판매를 금지하는 포지티브제도로의 전환을 도모함.
- 즉,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1995년 식품위생법 개정 시 포지티브 제도로의 검토에 관한 일본 의회의 결의가 행해짐.
- 그 이후에도 수입식품의 증대와 식품중의 농약등의 잔류에 관한 소비자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그 규제강화가 요구되어 왔음.
-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3년5월 일본 의회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 법 개정을 공표함. 3년 후인 2006년 5월 말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

음. 그 후 2005년 11월 16일 후생노동성 정령에 의하여 2006년 5월 29일부터의 시행이 결정되었음.

- 포지티브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는 ① 농약(농약단속법1948년 법률 제82호 제 1조의 2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② 사료첨가물(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1953년 법률 제 35호 제 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농림수산성령에 규정된 사료에 첨가 혼합, 침투등의 방법으로 첨부된 것) ③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으로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분)으로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한 물질까지를 포함함.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후생노동성대신이 결정하는 성분은 본제도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가 됨.
- 이번의 개정으로 잔류기준이 없던 농약등에 많은 잠정기준이 설정되고 잔류기준이나 잠정기준에서 설정하고 있지 않았던 농약등에 대해서도 0.01ppm이라는 일률기준이 설정되었음.
- 본제도는 미가공식품,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대상임. 식품첨가물은 본제도에 의한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유통되는 것을 첨가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본제도의 대상임
- 담당관청으로는 유통면에서 후생노동성 식품안전검사부 기준심사과, 수입면에서는 기획정보과 검역소 업무관리실이 있음. 생산은 농림수산성 안전관리과 농산대책실, 검사는 후생노동성 식품안전과의 해당지역 검사과에서 담당4)

---

4) [예] 도쿄검역소

- 주소 : 035-0064, 東京都江東區青海2-56 東京南湾合同廳舎

- Tel : 03-3599-1520, Fax: 03-5530-2153

- 담당지역 : 茨城縣、栃木縣、群馬縣、埼玉縣、東京都(동경공항검역소 지역 일부를 제외)

## <포지티브 시스템의 요지>

### 현행 제도 (2003년 기준)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이 정해진 농약 등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250 농약, 33 동물용의약품 등에 잔류기준을 설정	
□□	□□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농약 등이 잔류해도 기본적으로 유통을 규제하지 않음.

### 포지티브시스템 이행후 (2006.5.29시행)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에 정해진 799 농약 등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물질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시행까지는 현행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약 처리법에 의한 기준, 국제기준, 구미기준 등을 따른 잠정적인 기준 설정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양으로서 후생대신이 일정량(일률기준치)을 공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진 것을 공시(특정농약 등) 65 물질
+	□□	□□
등록과 동시에 잔류기준 설정 등, 잔류기준설정의 촉진	일정량(0.01ppm)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대상외
□□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자료 : 후생노동성 설명자료

<http://www.mhlw.go.jp/shingi/2003/06/s0627-22a.html>

## □ 식품위생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03년 5월30일 공포)

### ○ 개정법 제 11조 1항 (현행법 제 7조 1항)

- 후생노동대신은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판매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또는 조리시의 보존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대하여 규격을 정할 수 있음.

### ○ 개정법 제 11조 3항 (신설)

- 포지티브제도의 대상 물질은 「인체에 해를 미칠 염려가 없는 양으로 후생성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하는 양」(이하 일률기준이라 칭함)을 초과한 식품은 이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또는 판매를 해서는 안됨.

- 단 해당물질의 해당식품의 잔류량의 한도에 대하여 제1항의 식품의 성분과 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본 제도에 대해 종종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잔류기준을 정하지 않은 부분(799농약 등)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고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 점임. 그러나, 포지티브시스템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해당되는 것은 불특정다수 전체가 규제대상이며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 규제대상 및 내용

### □ 포지티브제의 대상물질

#### ▶ 농약(1948년 법 제 82호 제 1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것)

농약,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

## 림수산성령이 규정한 것

- (a)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등 기타 동물 또는 바이러스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기타 약제
- (b) 농작물 등의 생리기능의 촉진에 사용된 성장촉진제, 발아억제제 기타 약제
- (c) 해충의 소멸을 위하여 이용되는 천적  
[예] 크로르비리호스(살충제), 다니노짖(식물성장조정제), 거미(천적)
- (d) 또한 농약단속법 제 2조에 단서에 따라 "원재료에 비추어 농작물 등 사람, 축산물, 수산물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시정되는 축정농약"이 포함됨.  
[예] 식산, 탄수식소나트륨 등

### ▶ 사료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1953법률 제35항) 제 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결정된 사료

- (a) 사료의 품질저하방지제(항산화제, 점결제)
- (b) 사료에 대한 영양성분의 보급(비타민제, 미네랄, 아미노산 등)
- (c) 사료의 영양성분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합성항균제, 항생물질, 항기생충용제 등)을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된 것.  
[예] 크롤테토라사이클린(항생물질), L-아스코르빈산(비타민 C)

- ▶ 의약품약사법 제 2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으로서 과거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분인 물질
  - 동물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 의약품으로 소, 말, 돼지, 닭 등 17동물류를 대상으로 사용이 허가된 것

## □ 후생성 조치 및 검사, 벌칙규정

○ 일본 후생성은 본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조치를 고시를 통하여 제시함.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률기준을 설정하여 고시. 2005년 후생성의 고시에서는 일률기준을 0.01ppm으로 설정.

(2) 동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고 후생대신이 지정한 물질」(이하 대상외 물질이라 칭함) 65개 물질을 고시로 지정.

(3)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성분과 관련된 규격으로서 758개의 농약 등 식품에 잔류하는 허용한도(소위 잠정기준)를 고시로 설정.

○ 검사명령제도

-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지시에 의하여 수입자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입 절차 진행이 금지되는 제도임

○ 모니터링 검사제도

- 식품위생법 위반의 개연성이 낮은 식품 등에 대하여 품목별로 연간 수입량과 과거의 위반실적을 반영한 연간 계획에 의하여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있어 실시되는 검사제도를 칭함

- 모니터링검사제도는 다양한 수입식품의 위생상태를 파악하고, 원활한 수입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식품위생감시원이 검사대상물을 추출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결과의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수입절차를 진행시키기도 함.
- 기타 검사제도
  - 이외의 행정검사로는 초기수입식품 등의 검사,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식품 등의 확인검사, 운송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식품 등의 확인검사 등이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하여 실시됨. 또한 초기 수입시와 정기적인 수입시에 수입자가 식품위생안전을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확인 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 검역소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음.
  - 이하의 벌칙은 상기의 검사 명령 및 제도를 먼저 거치고 최종적으로 적용됨.
  - 근거 법률은 식품위생법 제 72조로 식품위생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11조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sup>5)</sup>

---

5) 제11조 2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방법에 의해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하여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에 의한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 수입, 또는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임

### Ⅲ. 제도 도입 영향 및 시사점

#### 1. 영향 예측 : 미국, EU 등 외국과의 비교

- 미국, EU의 잔류 농약 규제는 다음과 같음.

##### □ 미국

- 소관성청 : 미국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근거법령 : 연방살충제살균제살포제법(FIFRA), 농약등록등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 잔류규정식품품질보호법(FQPA)
- 기준설정농약(2003년4월기준) : 345농약
- 평가방식
  - 데이터 요구: 40CFR 158.240
  - 테스트가이드라인: OPPTS Harmonized Test Guideline Series 860
  - 평가결정 : JMPR에 있어서 독성, 폭로성 평가의 근거
- 기준설정 제외: 리스크가 매우 낮은 농약식품 등 (4품목), 리스크가 낮은 고분자(32품목), 면제조건이 붙은 리스트(900품목)
- 잔류규제: 포지티브 리스트제
- 기준 미설정농약의 잔류 규제
  -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부정식품으로 분류됨 (실질상 0.1-0.01ppm)

##### □ EU

- 소관성청 : EFsa(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C(the European Commission)
- 근거법령 : 이사회지령 76/895/EEC, 86/362/EEC, 82/363/EEC, 90/642/EEC
- 기준설정농약(2003년4월기준): 133농약
- 평가방식

- 데이터 요구 : 이사회지령 91/441 EEC Annex I-III
- 평가결정 : JMPR에 있어서의 독성, 폭로성 평가에 근거
- 잔류규제: 네가티브제<sup>6)</sup>
- 이 외에도 캐나다(포지티브 제도), 오스트리아(포지티브제도), 뉴질랜드(포지티브제도)를 각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즉, EU를 제외한 구미의 여러나라에서는 포지티브제도를 이미 실시하여 잔류 농약 및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적극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음.
- 잔류기준 및 잠정기준의 설정에 있어 미국, EU등의 기준을 참조함. 이는 이들 나라들이 과학적인 근거(JMPR(FAO/WHO합동잔류농약전문가회의) 및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 회의)에서 실험 후 얻은 독성시험결과의 데이터에 의하여 잔류기준을 설정)에 의하여 농약잔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함.
- 일본의 잔류 기준이 일률기준치 0.01ppm(2005년 후생성 고시)라 할 경우, 이는 미국과 비교할 경우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임을 알 수 있으며 0.01ppm의 수량상 거의 모든 농약을 사용하기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경우, 비관세장벽으로서 무역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지만 일본은 이러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인 코덱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코덱스 기준이 없는 것은 미국, EU등의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로 잠정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여겨짐.

---

6) 일본정부측의 발표자료로는 포지티브로 나타나 있음, 그러나 EU의 경우 일본과 동일한 방식의 포지티브로는 볼 수 없으며, EU의 각국별 규제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 시사점 및 대응방안

### □ 한국 정부의 대응 및 민간 반응

- 한국의 농림부, 농진청, 농관원, 유통공사, 농약회사 등은 2005년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일본측 포지티브제 전환에 대비
- 일본측에 잔류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17개 품목 35성분에 대한 잠정적 기준에 대해 17건을 선별 하여 변경 및 완화를 요청 → 일본측은 중요성분으로 다시 선별해 줄 것을 요청 → 한국 정부측이 6개 품목 15개 농약성분 17건으로 재요청함 → 일본측은 이 중 6개 품목의 13개 농약성분 14건에 대해서 변경안을 반영하게 됨(2006.3 월 현재)
- 농약검사는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향후 식품의 반품회수가 증가할 전망.
- 다이옥신보도와 같이 어떤 사건이 있을 경우 검사센터의 조사의뢰가 집중되므로. 수입의 검역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증가 예상됨
- 가공식품 원료 등에서 검출된 경우, 일본등 수입상과 유통업체 등에서 국내외 제조기업, 농가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달라지는 포지티브제도에 대해서 야채 생산시 참고점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7) 자료원 : 대일 수출기업인 K무역(소비재)외 1인과의 인터뷰 결과(KOTRA 동경무역관 2006.4)

### <과거의 위반사례를 통한 재배방법 실천례>

(사례 a) 시금치에서 거염벌레가 발생, 살충제를 살포하고 그후 시금치가 시들어버림. 그후 땅속에 잔류농약이 계속 남아 있게 되어 그뒤에 생산된 시금치에서도 농약이 검출되게 됨.

▶ 시사점 : 농약은 땅속에 잔류함. 따라서 전년, 또는 재작년의 작물의 영향이 현재 재배하는 작황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약을 땅속까지 뿌리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요망됨

(사례 b) 쌀에 전염병이 돌아 살포가 허용되어 있는 농약인 벤레토를 소독제로서 사용함.

▶ 시사점 : 국내에 사용 허가가 된 농약이라도 사용법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깊은 주의가 필요함.

(사례 c) 하우스 안에서 민달팽이가 발생, 하우스 구석에 막을 만들고 유인살충제를 살포함. 살포방법이 나빠 고마츠나(일본국거리 나물)에 까지 분산됨. 고마츠나에 뿌려진 유인살충제는 일률기준치를 넘음

▶ 시사점 : 확산방지책, 분사방법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구역을 나누고 분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마츠나에 적용가능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사례 d) 일률기준이 없는 항목의 농약이 엉뚱한 품목의 농약 잔류 검사에서 검출됨. 문제의 농약은 수목용 살충제로서 생산자는 가정의 수목에 살포후 분무기의 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야채의 방제를 행함.

▶ 시사점 : 기계, 기구의 철저한 세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사례 e) 8월 수확 예정인 콩에 대해 6월에 살충제를 사용함. 살충제의 사용시기는 수확전 30일이었음. 그러나 성장이 빨라져 7월에 수확

▶ 시사점 : 농작물은 육성이 빨라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있는 살포간을 설정해야 함. 또 생산자는 재배기록을 출하 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농약사용기준의 준수

- . 식품작물 등의 농약사용의 준수(적용작물, 사용량 또는 농도, 사용시기, 총사용 회수) 농약의 라벨의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 및 확실한 세정

- 농약비산(飛散)시의 주의

- . 근접농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의 전파 방지
- . 실포시의 바람의 풍향과 풍속
- . 작물에 근접한 적정산포
- . 농지의 가장자리에서의 산포 지양
- . 근접재배작물과의 연계
- . 분무기 노즐의 교환

○ 농약의 비산(飛散)에 의하여 일률기준인 0.01ppm이상의 농약의 잔류가 검출되게 되면 농산물의 대일수출은 어려워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이러한 잔류농약의 분석은 매우 정밀하여 飛散되는 농약까지 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큰 주의가 요망됨

○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입시의 절차는 변함이 없음. 따라서 추가의 수입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나 검역과정의 강화, 시간 및 비용 소요에 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농수산물 부분에서 일본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발효가 예상되고 있는 농산물 포지티브제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본 제도는 대일수출의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 등에 비하여 한발 앞선 정확한 대응을 이룬다면, 이러한 농산물 포지티브 제도의 위협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됨

## IV. 참고자료

### 1.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2006년도)

#### □ 제도개요

- 목표 : 일본에 수입되는 식품의 수입건수가 179만건(2004년도 기준), 식량자급률이 40%인 달하는 상황에서 본 감시계획은 일본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감시 활동을 목표로 함.
- 실시기관 : 후생노동성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 28조의 규정에 근거한 모니터링 검사 및 제 26조의 규정에 근거함. .
- 과거 실적 : 2005년 11월 7일에 발표한 2005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감시결과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 속보치로서 수입제출건수 약95만건, 검사건수 10만건(총건수중 약 10.2%)중에서 위반건수가 432건에 달함.
- 검사 실시 : 2006.4.1-2007.3.31일
- 포지티브 제도와의 관련
  - 인간에 유해를 끼치는 양을 넘는 첨가물을 가미한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포지티브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입시의 검사항목을 늘리는 등 검사항목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수입식품 등 감시지도의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는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국가의 내외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여기서 과정이란 생산국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이하 "생산"등으로 칭함)과 수입후의 국내유통까지의 각 과정을 포함함.
- 본청 및 검역소에서는 세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감시 지도를 행함.
  - (1)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제출서 등에 의하여 식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함.
  - (2) 다종다양한 수입식품 등의 식품위생의 상황에 대하여 폭넓게 감시하기 위해 제 28조의 규정에 기초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 (3) 식품위생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범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수입식품등에 대해서 제18조에 근거한 검사 명령을 발동할 것
  - (4) 특정지역, 업체에 의해서 제조된 수입품이 식품위생상 필요할 경우 제8조, 제17조에 근거한 포괄적 수입금지제도를 검토할 수 있음.
  - (5) 범위반을 반복하는 수입자에 대해 범위반의 원인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제55조2항의 규정에 기초한 수입에 관한 영업금지, 정지를 검토 가능함.
- 중점적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할 사항
  - (1) 수입서 제출에 의한 확인(제 27조에 근거)
  - (2) 모니터링 검사(제28조)
  - (3) 모니터링 조사 이외의 검사(제 28조)
  - (4) 검사명령(제 26조)
  - (5)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제 8조 또는 제 17조)
  - (6) 해외에서 문제발생 정보 등에 근거한 긴급대응

## □ 위반이 판명했을 때의 일본 정부의 대응방안

- (1) 검역소의 검사 또는 수입자의 자주검사에 의해 위반이 판명한 경우에는 이하의 절차에 따라 수입제출서를 제출한 검역소, 본청 또는 관계도현에 있어서 연계를 하여 수입자가 신속한 철수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행함과 동시에 수입시에 있어서 검사의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함.
  - 통관정의 식품에 대해서 검역서는 수입자에게 폐기 반환 등의 지시를 내림.
  - 통관후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청현 등이 수입자에 대해서 회수 등의 지시를 행함.
- (2) 검역소는 위반이 있었던 수입자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도함.
  - 해당 수입자는 해당식품 등 위반원인의 조사를 행하여 결과가 반명되는 대로 검역소에 보고할 것
  - 동일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원인의 조사를 행하여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입자 스스로에 의한 현지에서의 조사 위반이 된 항목의 수출국에 있어서 검사, 샘플품의 검사 등에 의해 검증함과 동시에 개선 효과에 대하여 검역소에 통보할 것
- (3) 정부에서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의 관점에서 범위반을 반복하는 수입자 또는 범위반으로 심각한 식품의 위험을 유발시킨 수입자에 대하여 동법 제 55조2항에 근거한 영업금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4) 또한 검역소는 범위반의 태도가 악질인 판례에 대해서는 고발을 행함.

## 2. 일본포지티브시스템 관련 인터넷 참조주소

- 분야별시책 「식품중 잔류농약 등」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zanryu2/index.html>

- 식품중 잔류하는 농약 등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관하여(2005.11.29 공포고시일람)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zanryu2/051129-1.html>

- [2005.11.29 食安發제1129001호] 식품위생법 등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식품위생법 제11조제3항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에 관하여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zanryu2/dl/051129-3.pdf>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 시험법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zanryu3/index.html>

- 기타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원 :

- 일본 정부 발표 자료 및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설명 자료,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준심사과 , 기획정보부 검역소 업무관리실 담당자 인터뷰, 농림부산성 안전관리과 농산대책실 담당자 인터뷰 종합 등

### 3. 신 포지티브 제도하 주요야채의 농약 잔류기준

용도	농약명	뿌리아채류(根菜類)					잎사귀 야채류(葉莖菜類)					과실야채류(果菜類)				
		무 류		당근	감자	토란	배추	양배추	시금치	양상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뿌리	잎													
제 초 제	2, 4, 5 T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2, 4 D				0.2											
	E P N										0.1		0.1	0.1		
	E P T C	0.1	0.1	0.04	0.3	0.04	0.1	0.1	0.1	0.1	0.04	0.04	0.1	0.1	0.01	0.1
	アミトロール (아미트롤)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アラクロール (알라클로어)	0.01	0.01		0.01		0.01	0.01	0.01							
	キザロポップエチル (키잘로포페틸)	0.1	0.3		0.1		0.3	0.3	0.05		0.05	0.05	0.02	0.05		
	グリホサート (글리포세이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5	0.2		
	グルホシネート (글루포시네이트)	0.5	0.5	0.5	0.5	0.1	0.2	0.5	0.5	0.5	0.2	0.2	0.2	0.2		0.5
	クレトジム (클레소딤)				0.2			0.2		0.1		0.5		1.0		
	クロルプロファミ (클로르프로팜)				50.0		0.05	0.05	0.05	0.05		0.05				
	シアナジン (시아나진)			0.02	0.1						0.05	0.05	0.05			
	ジカンバ (디캄바)				0.05											
	シクロキシジム (사이클록시딤)	2.0	2.0		2.0		2.0	2.0		0.2	0.2	0.5		0.05		
	ジメチピン (디메치핀)				0.05											
	セトキシジム (세트키시딤)	10.0	10.0	10.0	4.0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チオベンカルブ (티오벤칼브)	0.2	0.2	0.2	0.05	0.05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テブラロキシジム (테브라로키시지움)											0.5				
	トリフルラリン (트리플루라린)	0.05	0.1	0.05	0.15	0.05	0.05	0.1	0.05	0.1	0.1	0.05	0.05	0.1	0.05	0.05
	ハロスルフロンメチル (할로실플론메틸)												0.5			
	ビフェノックス (비페녹스)				0.05											
	ピリデート (피리데이트)							0.03				0.2				
	フェノキサプロップエチル (페노키사프로페틸)				0.1			0.1				0.1				
	ブタミホス (부타미포스)				0.2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フルアジホップ (플루아지호프)	0.5	0.2	0.1	0.1	0.1	0.1	2.0		0.1	0.1	0.5	0.1	0.1		
	ペンタゾン (펜타존)	0.05	0.05	2.0	0.1	0.05	0.05	0.05	0.05	0.05	0.05	0.2	0.1	0.05	0.05	0.05
	ペンティメタリン (펜티메탈린)	0.05	0.05	0.05	0.2	0.2	0.2	0.2		0.2	0.2	0.2		0.05		0.2
	メタベンズチ아ズロン (메타벤지아주론)				0.1						0.05	0.05		0.05		
メトスルフロンメチル (메트실플론메틸)									0.05							
メトラクロール (메트라클로)	0.1	0.1		0.2	0.1	0.1	1.0	0.3			1.0	0.05			0.1	
メトリブジン (메트리부진)	0.5	0.5		0.6			0.5	0.5	0.5	0.5	0.5	0.5	0.5			
レナシル (레나실)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살 균 제	농약명	뿌리아채류(根菜類)					잎사귀 야채류(葉莖菜類)					과실야채류(果菜類)				
		무 류		당근	감자	토란	배추	양배추	시금치	양상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뿌리	잎															
살 균 제	アゾキシストロビン (아족시스트로빈)				0.03						5.0	0.1	1.0	1.0		
	イプロジオン (이프로디온)	5.0	5.0	5.0	0.5	0.1	5.0	5.0	5.0	10.0	5.0	0.5	5.0	5.0	5.0	5.0

	イマザリル (이미자릴)				5.0							0.5	0.5			
	イミノクタジン (이미녹타딘)				0.02			0.03		0.1	0.1	0.1	0.3	0.3		
	カブタホール (캅타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キャプタン (캅탄)											5.0	5.0			
	クレソキシムメチル (크레소짐메틸)									2.0		0.5				
용도	농약명	뿌리아채류 (根菜類)					잎사귀 야채류(葉莖菜類)					과실야채류(果菜類)				
		무 류		당근	감자	토란	배추	양배추	시금치	양상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뿌리	잎													
살 균 제	クロロタロニル (클로로타로닐)	0.1	2.0	2.0	0.2		2.0	2.0		1.0	5.0	0.5	5.0	5.0	0.05	0.5
	シアゾファミド (씨아조파미드)				0.05		0.7	0.05	25.0			0.05	0.7	2.0		
	ジエトフェンカルブ (디에토펜카브)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ジクロフルアニド (디클로플루아니드)							5.0	15.0	10.0	5.0	0.1	15.0	15.0		
	ジフェノコナゾール (디페노코나졸)				0.1										0.5	
	シプロコナゾール (사이프로코나졸)				0.01	0.01						0.2		0.05	0.05	
	シプロジニル (시프로디닐)									1.0		0.05	0.5	0.5		
	ジメトモルフ (디메쏘모르프)				0.1						0.3		0.1	2.0	2.0	
	シモキサニル (사이목사닐)				2.0						2.0		2.0	2.0	2.0	
	テトラコナゾール (테트라코나졸)													0.5	1.0	
	テブコナゾール (테부코나졸)												0.2		1.0	
	トリアジメノール (트리아디메놀)													0.5		
	トリクラミド (트리클라마이드)	0.2	0.2	0.2	0.3	0.3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トリフルミゾール (트리프루미졸)	1.0	1.0	5.0			1.0	1.0	1.0	1.0	1.0	1.0	1.0	2.0	1.0	1.0
	トルクロホスメチル (톨크로포스-메칠)	2.0	2.0	2.0	1.0	1.0	2.0	2.0	2.0	2.0	2.0	2.0	2.0	2.0	3.0	2.0
	ビテルタノール (비터타놀)													0.5		
	ピリフェノックス (피리페녹스)													0.1	0.2	
	ピリメタニル (피리메타닐)										2.0			2.0	2.0	
	ファモキサドン (화목사돈)				0.1		1.0						0.5	2.0	2.0	
	フェナリモル (훼나리몰)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フェンアミドン (훼나미돈)				1.5	0.02	0.02	0.5			20.0	1.5	0.2	0.3	1.0	
	フェンヘキサמיד (펜헥사마이드)												0.1	2.0	2.0	
	フルアジナム (푸아지남)				0.1	0.1		0.1	0.1		0.1	0.1	0.1			
	フルオリמיד (플루오리מיד)					0.5							1.0			
	フルジオキソニル (후루디옥소닐)				0.02						1.0		0.1	2.0	2.0	
	フルスルファミド (후루설파미드)				0.05		0.1	0.1								
	フルトラニル (프루트라닐)				0.5			2.0	2.0	3.0	2.0		2.0	2.0	5.0	
	プロクロラズ (프로클로라즈)										2.0					
	プロシミドン (프로시미돈)				0.5			2.0		5.0	5.0	0.5	5.0	5.0		
	プロバモカルブ (프로파모카브)	5.0			0.5			0.1	10.0	10.0	3.0		2.0	1.0		
	プロビコナゾール (프로피코나졸)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ヘキサコナゾール							0.1			0.1		0.05	0.1		

	(핵사코나졸)																
	ベンコナゾール (펜코나졸)						0.05		0.2	2.0	0.1	0.1	0.2				
	ベンシクロン (펜시클론)			0.5				1.0	1.0			1.0	1.0				
	ボスカリド (보스칼리드)			3.0	0.05	0.05	3.0	3.0		11.0	3.0	3.0	5.0	3.0			0.7
	ホセチル (포세틸)			100.0	35.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100.0			100.0
	ホルベット (포르페트)			0.02					2.0		2.0	2.0	3.0				
	ミクロブタニル (마이크로부타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メバニピリム (메파니피림)												2.0	5.0			
	メプロニル (메프로닐)	1.0	5.0		1.0				1.0	1.0			1.0	1.0			
용도	농약명	뿌리아재류 (根菜類)					잎사귀 야채류(葉莖菜類)					과실야채류(果菜類)					
		무 류		당근	감자	토란	배추	양배추	시금치	양상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뿌리	잎														
살 충 제	BHC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D C I P	1.0	1.0	1.0	0.1	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DDT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アクリナトリン (아크리나트린)												0.1	0.5	0.5		
	アセキノシル (아세퀴노실)													0.5			
	アセタミプリド 아세타미프리드	0.5	5.0		0.5		5.0	5.0						5.0	5.0		
	アセフェート 아세페이트	1.0	10.0	0.5	1.0		5.0	5.0		5.0	0.1	0.5	5.0	0.5			0.5
용도	농약명	뿌리아재류 (根菜類)					잎사귀 야채류(葉莖菜類)					과실야채류(果菜類)					
		무 류		당근	감자	토란	배추	양배추	시금치	양상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뿌리	잎														
살 충 제	アミトラズ (아미트라즈)												0.5				
	アルジカルブ (알디카르브)				0.5							0.05					
	アルドリン (알드린)	0.02	0.02		불가		0.02	0.02	불가	0.02			0.02	0.02	불가		
	イソフェンホス (이소펜포스)				0.1			0.1				0.1					0.02
	エチオフェンカルブ (에치오펜카르브)	0.5	5.0		0.5		5.0	2.0	0.5	10.0			5.0	5.0			
	エトキサゾール (에톡사졸)												0.5	0.1			
	エトフェンプロックス( 에토펜프로क्स)	2.0	10.0		0.1	0.1	5.0	2.0		2.0	2.0		2.0	2.0			
	エトプロホス (에토프로포스)				0.02			0.02		0.02		0.02	0.02	0.02			
	エトリムホス (에트림포스)	0.1	0.2	0.2	0.1		0.1	0.1	0.2	0.2	0.1	0.1	0.1	0.2	0.2	0.2	0.2
	エマメクチン安息香酸塩 (에마멕틴벤조에이트)	0.1	0.1				0.1	0.1					0.1	0.1			
	エンドリン (엔드린)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オキサミル (옥사밀)	0.5	1.0		0.1	0.1		0.02		0.5		0.05	2.0	2.0			0.1
	カズサホス (카두사포스)				0.02										0.01		
	カルバリル (카바릴)	1.0	1.0		0.1		1.0	1.0	1.0								
	キノメチオネート (키노메티오네이트)				0.3			0.3					0.5	0.5			
	クロチアニジン (크로치니아딘)	0.1	5.0	2.0	0.25	0.05	0.1	0.7	0.02	3.0	0.7	0.02	2.0	2.0	0.02	2.0	2.0
	クロフェンテジン (크로펜테진)												1.0	1.0			
	クロルピリホス (클로르피리포스)	0.5	2.0	0.01	0.05	0.01	1.0	0.05	0.01	0.1	0.2	0.05	0.05	0.5	0.01	0.01	0.01
クロルフェナビル (클로르헨나피르)	0.1	3.0				1.0	1.0		3.0			1.0					
クロルフェンビンホス클	0.1	0.2		0.1			0.2			0.3	0.05	0.2	0.1				

	(클로르펜피라드)															
	クロルフルアズロン (클로르플루아즈론)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酸化フェンブタスズ (펜부타딘옥사이드)											2.0	1.0			
	ジアフェンチウロン (디아펜치우론)						0.3					0.6	0.05			
	ジクロロホス (디클로브스)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1	0.1	0.1
	ジコホール (디코홀)											2.0				
	シハロトリン (싸이할로쓰린)	0.5	1.0	0.5	0.04	0.05	1.0	0.4	0.5	2.0	2.0	0.5	0.5	0.5	0.5	0.5
	シフルトリン (싸이플루쓰린)	0.5	2.0	2.0	0.1	0.1	2.0	2.0		2.0	2.0	2.0	2.0	2.0		2.0
	ジフルベンズロン (디프루벤주론)						1.0	1.0				0.05	1.0	1.0		
	シヘキサチン (싸이헥사틴)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シベルメトリン (싸이퍼메쓰린)	0.05	5.0	6.0	0.05	0.05	5.0	1.0	2.0	2.0	5.0	0.1	0.5	2.0		
	ジメトエート (디메토에이드)				1.0			0.1						1.0		
	シロマジン (싸이로마진)				0.5		3.0		7.0	5.0	2.0	2.0	0.2	0.5		
	スピノサド (스피노사드)	0.2	1.0		0.02	0.02	8.0	2.0	8.0	8.0			0.5	0.5		
	ダイアジノン (다이아지논)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チオメトン (치오메톤)	0.1	0.1	0.1	0.01	0.01	0.1	0.1	0.1	0.1	0.1	0.1	0.3	0.1	0.1	0.1
	ディルドリン (디월드린)	0.02	0.02		불가		0.02	0.02	불가	0.02			0.02	0.02	불가	
	テブフェンピラド (테부펜피라드)												0.5	0.5		
	テフルトリン (테플루트린)	0.1	0.5				0.1	0.1								
	テフルベンズロン (테프루벤주론)	0.1	1.0		0.1		0.5	0.5		1.0	1.0		0.2	0.5		
	デルタメトリン (델타메쓰린)	0.01		0.1	0.01	0.01	0.5	0.5	0.5	0.5	0.1	0.1	0.2	0.2		
	トラロメトリン (트라로메쓰린)	0.5	0.5	0.5	0.05	0.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トリアゾホス (트리아조포스)				불가			0.1				불가				
	トリクロルホン (트리클로폰)	0.2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1.0	0.2	0.5	0.5
	トリフェンピラド (트리펜피라드)	0.2	10.0				0.5	0.3		5.0	5.0		1.0	2.0		
용도	농약명	뿌리아채류(根菜類)					잎사귀 야채류(葉莖菜類)					과실야채류(果菜類)				
		무류		당근	감자	토란	배추	양배추	시금치	양상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뿌리	잎															
살충제	鉛及びその化合物 (납 및 납화합물)				1.0				5.0				1.0	1.0		
	ニテンピラム (니텐피람)	0.2	5.0		0.2								5.0	5.0		
	ノバルロン (노발루론)							1.0					1.0			
	バミドチオン (바미도티온)				0.5			0.5								
	パラチオン (파라치온)	0.3	0.3		불가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パラチオンメチル (파라치온메틸)	1.0		1.0	0.1	1.0	1.0	0.2	1.0	1.0	1.0	1.0	0.2	0.2	1.0	1.0
	ビオレスメトリン (바이오레쓰메쓰린)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ヒ素及びその化合物 (비소와 그 화합물)				1.0				1.0				1.0	1.0		
	ビフェナゼート (비페나제트)												2.0	2.0		
	ピフェントリン (비펜스린)				0.05		0.5	2.0			0.5		0.5	0.5		
	ピメトロジン (피메트로진)				0.1			0.02		0.1			1.0	1.0		
ピラクロホス (피라크로포스)	0.1	0.1	0.5	0.05		0.1	0.1					0.1	0.1			

	비리다벤 (피리다벤)			2.0	0.1	0.1				1.0		1.0	1.0	3.0	2.0	
	비리다릴 (피리다릴)	0.1	5.0				1.0	0.2		5.0	5.0		1.0			
	비리프로キシ펜 (피리프록시펜)											0.5	1.0			
	비리미카브 (피리미카브)	0.1	2.0		0.05		2.0	1.0	1.0	1.0	0.5	0.5	2.0	1.0		
	비리미지펜 (피리미지펜)							0.1								
	비리미호스메틸 (피리미포스메틸)	1.0	1.0	1.0	0.05		1.0	1.0	1.0	1.0	1.0	1.0	2.0	2.0	1.0	1.0
	비레트린 (피레트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피프로닐 (피프로닐)				0.01		0.1	0.05								
	페니트로치온 (페니트로티온)	0.2		0.2	0.05			0.5	0.2	0.2	0.2	0.2	0.2	0.2		0.2
	페노프칼브 (페노부카브)	0.3	5.0	0.3			0.3	0.3	1.0	0.3	0.5	0.3	1.5	1.0	0.3	0.3
	펜실호치온 (펜실포티온)				0.1							0.1		0.1		
	펜치온 (펜티온)				0.05											
	펜발레레이트 (펜발러레이트)	0.5	8.0	0.5	0.05	0.05	3.0	3.0	0.5	2.0	0.5	0.5	0.2	1.0	0.5	0.5
	펜비록시메트펜 (프록시메이트)								0.5				0.5	0.5	2.0	0.5
	펜프로바트린 (펜프로파트린)				1.0			0.4					2.0	2.0		
	플리트리네트 (플리트리네이트)	0.05	0.5	0.5	0.05	0.05	0.5	0.5	0.5			0.1	1.0	0.2		0.5
	플바리네트 (플리발리네이트)	0.05	0.5		0.01		1.0	0.5		3.0	0.5	0.1	1.0	0.5		
	플루페녹스론 (플루페녹수론)	0.1	10.0				0.5	0.5			10.0		2.0	0.5		
	프로치오호스 (프로치오포스)			0.1	0.05		0.1	0.2				0.1				
	헥사프루론 (헥사프루우론)				0.02											
	헥시치아졸스 (헥시치아졸스)					0.5							1.0			
	펠메트린 (페메스린)	0.1	3.0	3.0	0.05	0.2	5.0	5.0	2.0	3.0	3.0	3.0	0.5	1.0	3.0	3.0
	펜다이오칼브 (벤디오카브)				0.05											
	호キシム (혹심)				0.05			0.05		0.1		0.05		0.2		
	호스치아제트 (포스치아제이트)				0.03								0.2	0.2		
	마라치온 (말라치온)	0.5	0.5	2.0	0.5	0.5	2.0	2.0	2.0	2.0	8.0	8.0	0.5	0.5		2.0
	메타미도호스 (메타미도포스)				0.25			1.0		1.0			1.0	2.0		
	메치오칼브 (메치오카브)	0.05	0.05	0.05	0.05	0.05	0.05	0.1	0.05	0.1	0.05	0.05	0.05	0.05	0.05	0.05
	루페누론 (루페누론)						1.0	1.0			3.0			0.5		
용도	농약명	뿌리아채류(根菜類)					잎사귀 채류(葉莖菜類)					과실채류(果菜類)				
		무류		당근	감자	토란	배추	양배추	시금치	양상치	파	양파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뿌리	잎															
식물성 장 촉 진 제	우니코나졸P (유니코나졸 P)							0.1								
	클로르메쿼트 (클로르메쿼트)				10.0											
	다미노지드 (다미노자이드)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말레인산히드라지드 (말레인산히드라자이드)	0.2	0.2	10.0	50.0	0.2	0.2	0.2	25.0	0.2	0.2	20.0	0.2	0.2	0.2	0.2

단위 : ppm,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일률 0.01ppm 적용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본조사과 자료중